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83
----------	-----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8월 30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 제안이유

-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교육·의료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북권지역의 외국인지원시설로,
-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16길 23
- 시설규모 : 23㎡(월곡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 ※ 사무실외 기타 시설은 복지관과 공동 사용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한글교실, 컴퓨터교실 등)
- 인력운영 : 5명(센터장 1명, 과장 1명, 대리 2명, 사회복지사 1명)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0. 1. 1.~ 2022.12.31.)
- 위탁업무
 -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관리·운영 및 사업 일체
 - 노무, 법률, 생활 등 상담지원
 - 한글·컴퓨터 교육 등, 의료지원
 - 문화체험 행사 등
- 소요예산 : 253,011천원('19년도)
 - 산출근거 : 인건비 171,576천원, 운영비 11,571천원, 사업비 69,864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없음(재위탁사업 비대상)

다.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교육·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다양한 기관(병원, 경찰서, 법률사무소, 노무사, 봉사자, 종교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교육·의료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북권지역의 외국인지원시설로,

○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8조 및 제19
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
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
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2020년 민간위탁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외국인노동자센터운영 재계약·재위탁 추진계획(외국인
다문화담당관-5679, 2019.5.9.)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민간위탁 추진 개요

- 동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동의안 4건은 각각 성북, 강동, 은평, 양천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에 6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¹⁾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²⁾을 추진하고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의 시행('19.3.28.)으로
조례상 '근로(勤勞)'용어 '노동(勞動)'으로 일괄 변경되면서,

2019.7.1.일자로 시설명칭이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센터로 변경됨.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3. 28.>
-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노무, 법률, 생활 등 상담지원, 한글·컴퓨터 교육 및 의료지원, 문화체험 행사 등임.
- 외국인노동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³⁾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외국인 지원시설의 하나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⁴⁾와 상기의 동 조례 제7조⁵⁾에 따라 서울시 재한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에 필요한 각종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각종 서비스를 지원함.
- 동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은 순수 시비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시외국인지원시설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서울시에 거주

-
- 3)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4)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5)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8. 외국인 근로자 권익 및 인권 보호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불편·부당사항 해소로 권익보호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하기 위한 특화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
 는 금번 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성북, 강동, 은평, 양천 4개 센터를
 포함하여 총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외국인노동센터 운영 현황>

연번	시설명	운영기관	소재지	규모	인력	개설일	'19년 예산 (백만원)	비고 (위탁기간)
1	성동	(사)노동인권회관	성동구 무학로	452㎡	5명	'01.12.14	326	서울시소유단독시설 (2017.1.1.~2019.12.31)
2	성북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성북구 오패산로	23㎡	5명	'09.04.30	253	복지관 활용 임차 (2017.1.1.~2019.12.31)
3	금천	사회복지법인 티뷰크복지재단	금천구 가산로	65㎡	5명	'07.05.04	243	복지관 활용 임차 (2017.1.1.~2019.12.31)
4	양천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양천구 목동동로	70㎡	5명	'09.04.28	258	복지관 활용 임차 (2017.1.1.~2019.12.31)
5	은평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은평구 은평로	37㎡	5명	'08.03.13	251	복지관 활용 임차 (2017.1.1.~2019.12.31)
6	강동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	강동구 성안로	46㎡	5명	'08.03.15	266	복지관 활용 임차 (2017.1.1.~2019.12.31)

○ 6개 센터의 민간위탁 추진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위탁 추진 현황>

- **성동** : '01.12.14~'15.2.28 성동구 작업운영 후 1차 공모('15.3.1~'16.12.31.), 2차 재계약('17.1.1~'19.12.31.)
- **성북** : 1차 ~ 5차 연단위 위탁('09.4.30~'13.12.31), 6차 공모('14.1.1~'16.12.31.), 7차 재계약('17.1.1~'19.12.31.)
- **금천** : 1차 ~ 6차 연단위 위탁('08.3.13~'14.2.28), 7차 공모('14.1.1~'16.12.31.), 8차 공모('17.1.1~'19.12.31.)
- **양천** : 1차 ~ 5차 연단위 위탁('09.4.28~'13.12.31), 6차 재계약('14.1.1~'16.12.31.), 7차 공모('17.1.1~'19.12.31.)
- **은평** : 1차 ~ 7차 연단위 위탁('07.5.1~'13.12.31), 8차 재계약('14.1.1~'16.12.31.), 9차 재계약('17.1.1~'19.12.31.)
- **강동** : 1차 ~ 6차 연단위 위탁('08.3.13~'13.12.31), 7차 재계약('14.1.1~'16.12.31.), 8차 재계약('17.1.1~'19.12.31.)

- 금번 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4개 센터 중 양천센터만 재계약 대상으로 이는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수탁하는 경우 차기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임.

<동의대상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구분	수탁법인	현 수탁법인의 위탁기간	위탁방법
성북	진각복지재단	'14.1.1~'19.12.31.(6년)	재위탁(공모)
강동	대한사회복지개발원	'08.3.13.~'19.12.31.(11년9개월)	재위탁(공모)
은평	사회적협동조합	'08.1.1.~'19.12.31.(12년)	재위탁(공모)
양천	티뷰크복지재단	'17.1.1~'19.12.31.(3년)	재계약

- 한편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의 경우, 현재 위탁하고 있는 진각복지재단의 최초 위탁일이 '14.1월로 재계약 가능 기간(10년) 내에 있으나, 진각복지재단은 타 복지시설 운영시 위법적 운영으로 특별점검을 받음은 물론, 관계자의 성추행 등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재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재위탁 추진하게 되었음.

※ 진각복지재단 직원 2명이 진각종 총인(최고지도자 現김상균)의 장남에게 성추행 당하는 사건 발생으로 언론보도('18.12월, 한겨레 21 등)된 바, 이후 공익제보로 '18. 8월 서울시 복지정책과 주관 「진각복지재단 산하 시설」 특별지도점검이 실시되었으며,

※ 그 결과 종교활동 강요, 인사권 남용 등의 사유로 '성북구립 월곡종합사회

복지관' 수탁해지 처분 통보 받았으나,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지적사항 없음.

※ 이후 진각복지재단이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수탁포기 의사표시로 복지관의 수탁자가 변경되었으며, 관련 사건 소송이 진행중 임.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⁶⁾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⁷⁾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⁸⁾에 재한외국인의 생

6)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8)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8.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활지원 및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교육 등 각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

○ 「민간위탁조례」제4조⁹⁾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노무, 법률, 출입국, 산재, 의료, 생활 관련 상담, 한국어 교육,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에 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또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8조¹⁰⁾에서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10)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종합 검토 의견

- 동 위탁 사무는 서울시 재한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노무·법률상담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이에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11명,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83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교육·의료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북권지역의 외국인지원시설로,
- 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16길 23
- 시설규모 : 23㎡(월곡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 사무실외 기타 시설은 복지관과 공동 사용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한글교실, 컴퓨터교실 등)
- 인력운영 : 5명(센터장 1명, 과장 1명, 대리 2명, 사회복지사 1명)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0. 1. 1. ~ 2022.12.31.)

○ 위탁업무

-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관리·운영 및 사업 일체
- 노무, 법률, 생활 등 상담지원
- 한글·컴퓨터 교육 등, 의료지원
- 문화체험 행사 등

○ 소요예산 : 253,011천원('19년도)

- 산출근거 : 인건비 171,576천원, 운영비 11,571천원, 사업비 69,864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없음(재위탁사업 비대상)

다.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교육·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다양한 기관(병원, 경찰서, 법률사무소, 노무사, 봉사자, 종교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0조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민간위탁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외국인노동자센터운영 재계약·재위탁 추진계획
(외국인다문화담당관-5679, 2019.5.9.)

※ 작성자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 진희원 (☎ 2133-5078)